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3 년 12 월 24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(주)
(영문명)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., Ltd
(홈페이지) <http://shbnppam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2 신한금융투자타워 18, 19층
(전 화) 02-767-5777

대 표 이 사 : 조용병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본부장
(성 명) 이재호 (전 화) 02-767-5882

작 성 자 : (직 책) 사원
(성 명) 황미이 (전 화) 02-767-5794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9호)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

1. 사건의 명칭	2012가합1932
2. 원고·신청인	김 o o 외 1인
3. 판결·결정내용	당사 전부 승소
4. 판결·결정사유	원고 청구 기각
5. 관할법원	서울남부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13.12.20
7. 확인일자	2013.12.20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관련 없는 소송임

(제6-9호)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

1. 사건의 명칭	2012가단38043
2. 원고·신청인	장 o o
3. 판결·결정내용	· 당사 전액 승소 · 원고의 항소 포기로 확정
4. 판결·결정사유	원고 청구 기각
5. 관할법원	서울남부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· 판결일자: 2013.12.4 · 확정일자: 2013.12.19
7. 확인일자	2013.12.23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관련 없는 소송임